

의안번호	제789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7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일

#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9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일  
발의자 : 박우양,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이옥규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21.3. 도 정책기획관)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5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1. 6. 22. ~ 2021. 6. 28.(의회 홈페이지)

##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4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를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기능)” 을 “(위원회 구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전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전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농정국장이 한다” 를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의” 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으로 개의하고” 를 “출석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를 “의결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우에는” 을 “경우는”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중 “개시” 를 “시작”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3조) 중 “청취하거” 를 “듣거”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제3호 후단 중 “기한 내에” 를 “기한까지”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 한다.</li> <li>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li> <li>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li> </ol>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 북도 관할의 도시림·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 1호----- --.</li> <li>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 -----.</li> <li>3. ----- 법 제2조제3호--- -----.</li> </ol> <p>제3조(적용범위) ----- ----- 도시숲·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p>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군간 업무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산림녹지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삭 제>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립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농정국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삭 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  
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 -----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  
출석과 -----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메일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의 진행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③ -----  
-----  
-----  
----- 의결한다.

④ -----  
-----  
-----  
-----  
-----  
----- 경우는 -----.

제8조(회의의 진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작 -----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  
-----  
-----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생략)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2. (생략)
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 듣거-----  
-----.

제10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1조(의결)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기한 까지 -----  
--.

4.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  
-----  
-----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